

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더조은재가복지센터

제10조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

1. **계약목적**은 서비스의 이용조건, 절차,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.
- 『장기요양 수급자 (1등급~5등급)의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,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,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.』
2. **계약기간**은 장기요양 수급자(1등급~5등급)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, 서비스 종료는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, 사망,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.
- 1)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을 문서로 체결, 작성하여야 하며, 수급자(보호자)와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- 2) 이때, 계약서상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계약당사자, 계약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3.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(비급여 항목의 금액 포함)등을 설명한다.

제11조(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)

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비용은 다음과 같다.

1.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(2024년 1월 기준)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 등급	기 타
월 한도액(원)	2,069,900	1,869,600	1,455,800	1,341,800	1,151,600	643,700	

2. 방문요양수가(2024년 1월기준)

구 분	수가(1회당) / 단위 (원)	구 분	수가(1회당) / 단위 (원)
30분 이상	16,630	150분 이상	48,250
60분 이상	24,120	180분 이상	54,320
90분 이상	32,510	210분 이상	60,530
120분 이상	41,380	240분 이상	66,770

3.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분 류	금액(원)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 내 목욕)	84,67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 내 목욕)	76,34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(가정 내 욕조)	47,670

단, 방문목욕의 경우 주1회를 원칙으로 한다. (주1회 이상 횟수 증가 시 공단에 사유 통보)

4. 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수급자 본인 부담금비율은 다음과 같다.

구 분	일반 대상자	경감 대상자		의료급여 대상자	기초생활 수급자
본인부담금	15%	6%	9%	6%	0%
공단부담금	85%	94%	91%	94%	100%

단,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제14조 2-1항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14조 2-2, 2-3항의 보험수가로 계산하여 초과한 서비스 비용의 100%를 수급자(보호자)가 부담한다.

5. 기타 비용부담 등

병원동행, 대중목욕탕이용, 시장보기, 등의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.

제12조(신원인수인의 권리, 의무 및 계약 해지)

신원인수인의 권리,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신원인수 방법

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(가정) 또는 더조은 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(보호자)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.

2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

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,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기타,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을 부담하고,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고,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.

3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

- 1)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2)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3)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
- 4) 수급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 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5)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6)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대해 알 권리
- 7)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8)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·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
4.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본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1)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- 2)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- 3)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4)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, 또는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'갑', '을'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인정될 경우
- 5) 수급자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,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와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가 태만 할 경우
- 6) 수급자의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- 7)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- 8)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,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
- 9)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수급자(또는 보호자)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한다.